

'24년 「공공기관 위험수준 관리체계」 운영 계획

(공공안전정책팀, '24.1.4)

- **(배경)**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교육 등은 사후적 조치로 당해연도 공공기관 사고사망 대비·대응에 한계
- ▣ 공공기관 사고사망 및 사회적 이슈 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일터 안전을 확보할 필요

- **(내용)**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공공기관 사고사망 적시 대비·대응이 가능한 「공공기관 위험수준 관리체계」 운영

① (대상기관) 전체 공공기관(347개)

② (추진체계) 총괄기재부 ➡ 운영안전관리 전문기관* ➡ 실행공공기관

* (대표) 안전보건공단, (보조)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③ (운영방안) 중대재해* 및 국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위험수준 관리 실시

* ① 사고사망, ② 동시 2명 이상 부상(3개월 이상 요양), ③ 동시 10명 이상 부상

※ 안전신호등 적용 현장 등 적용 실익이 낮은 경우 제외 가능

< 단계별 위험 수준 및 관리 방안 >

위험 수준		주요 내용
1단계	중대재해 未발생	[자율관리] 안전경영책임계획서 ☞ 위험성평가/안전문화 확산*/자료 지원 (전문기관) * 6개 권역별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결의대회, 설명회 등
2단계	중대재해 1건	[집중관리] 재발방지계획서 ☞ 대상통보(기재부) → 계획제출(공공기관) → 계획검토(전문기관) → 검토결과 보고/통보(전문기관) → 이행(공공기관)
3단계	중대재해 2건 ↑, 이슈사고 발생시	[특별관리] 이행수준 점검(떨어짐·끼임·부딪힘 중점) ☞ 대상통보(기재부) → 점검(전문기관) → 점검결과 보고/통보(전문기관) → 개선·환류(공공기관)

- **(향후계획)** '24년 사업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1단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의한 자율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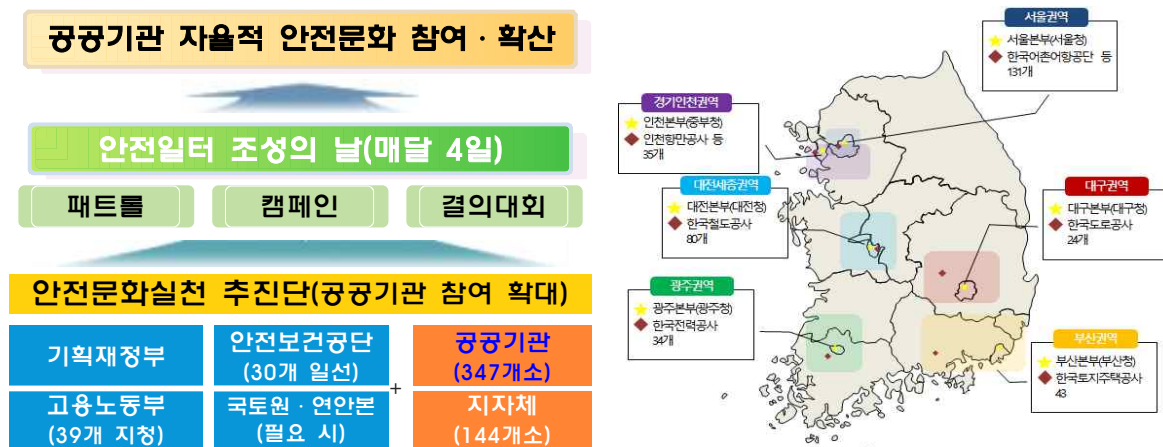
□ 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경영 활동 지원

- (위험성평가) 현장 실행력 제고 중점의 위험성 평가 검토* 지원
및 매뉴얼·평가기법 안내서 등 지속 개발·보급

*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사망이 발생('21~'23년)한 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산안공)에서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지원(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15조)

- (안전문화) 권역별 안전문화 확산 활동* 협업체계 구축

* 패트롤 점검(고용부-산안공-공공기관 공동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안전실무협의체) 발주공사*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발주 공공 기관** 협의체 구성·운영[고용부(산안공)에서 별도 시행, 필요시 기재부 참여]

* 최근 5년간('18~'22년) 총 174명 발생, 산재 사고사망자의 87.0% 점유

** 10개기관: 한전, NH, 도공, 코레일, 인국공, 수공, 한수원, 농어촌, 철도공단, 환경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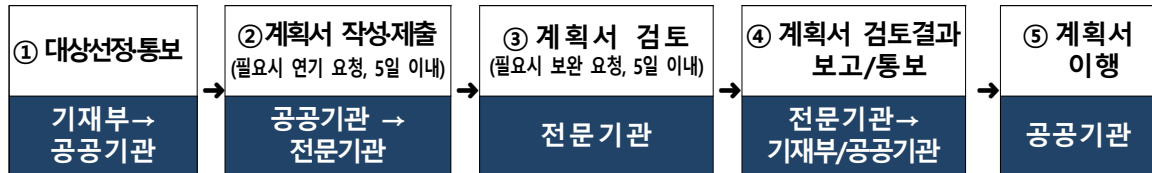
- (맞춤형 콘텐츠) 수요자 중심 콘텐츠·과학기술기반 정보 적기 제공

자체 점검표	안전보건자료	고위험사업장 예측 정보	위험상황신고 APP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점검표 불입 2]	업종·시기, 재해다발 형태에 따른 OPS 등	빅데이터·AI 분석기반 고위험사업장 리스트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 및 속보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점검 시 전원잠금·표지부착,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 중대재해(1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계획 적기 수립·이행 지원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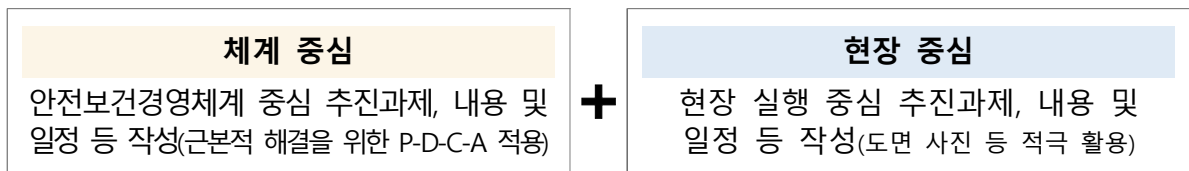
* 제출기한(기산일)은 통보·요청 등 당일 포함, 주말·공휴일 제외

① (대상 통보) 업무연락방을 통해 집중관리 대상 선정 알림 및 재발방지계획서[붙임 3] 제출 요청(기재부 → 공공기관)

② (계획서 작성·제출)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담아 안전책임경영 체계 개선 및 현장 실행 중심으로 추진과제 작성*

* 재해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 본사 안전부서에서 작성하고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공공기관 → 전문기관)

< 작성 내용(예시) >



※ (공통)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관리 방안을 포함·작성

③ (계획서 검토) 검토절차[붙임 4]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중심으로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필요시 국토원, 연안본 참여)

④ (결과 보고/통보)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검토 결과서 송부(전문기관 → 기재부/공공기관)

⑤ (계획서 이행) 공공기관이 계획서의 이행과제 자율 추진

※ (추가 재해 未발생) 다음 연도 등급심사 시 확인

(추가 재해 발생) 재발방지 계획의 현장 이행 수준을 방문·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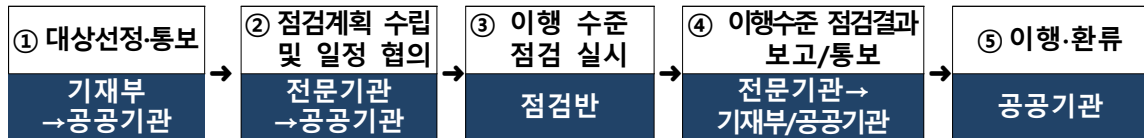
3단계

『이행수준 점검』에 의한 특별관리

□ 최일선 현장에서의 안전활동 이행력 강화* 지원

* 중대재해(2건 ↑) 또는 사회적 이슈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이 수립한 재발방지 계획의 현장 작동성을 점검

○ (추진체계)



* 제출기한(기산일)은 통보·점검일 등 당일 포함, 주말·공휴일 제외

① (대상 통보) 업무연락방을 통해 특별관리 대상 선정 알림

② (계획 수립) 안전보건공단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기재부 보고 후 대상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전문기관 → 공공기관)

③ (이행수준 점검)

• **시기** 재발방지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점검일 협의)

※ 사회적 물의·이슈화 정도에 따라 즉시 현장 방문(산안공+필요시 기재부 可)

• **대상** 중대재해 등 발생 현장(본사 포함) 또는 유사 공정

※ 중대재해의 인적, 물적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재부에서 결정

• **점검반** 안전관리 전문기관* + 공공기관 본사 안전담당자(간사)

* 산안공(2명)+필요시 국토원 및 연안본 1명 추가(중대사안인 경우, 점검반 확대)

• **내용** 최일선 현장에서 재발방지계획의 현장 이행 수준 확인 및 추가 기술지원* 실시

*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준수 및 근로자의 위험 인지·공유 확인 병행 실시(이행수준 점검표[붙임5] 활용)

3 · 8 파트							
	 추락	작업발판·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등	 끼임	덮개·울 설치, 정비·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	 부딪힘	화재작업 금지, 충돌방지 장치 설치 등	

④ (결과 보고/통보)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전문기관 → 기재부/공공기관)

※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조치 의뢰 검토

⑤ (환류) 이행과제 개선 조치 등 전사적 환류 실시(공공기관)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점검일자 : 20 . . .

■ 점검개요

회 사 명		현 장 명	
점 검 자	(직책) _____, (성명) _____	관계수급인	☐ 참여 ☐ 미참여(사유: _____)
참 여 자	도급인 000 부장 관계수급인 000 소장	000 과장 ***** 000 반장 *****	

점검 항목		해당 여부	점검결과		조치사항	조치 완료										
			적정	부적정												
< 추락 >																
① 비계	■ 비계상의 안전조치 - (공통)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달비계)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로프 고정점 2개소 이상 확보 등 - (이동식비계) 최상단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등	☐	☐	☐	○ 2층 거실 바닥 자재 반입구 주변 안전난간 설치 ○ 지하주차장 벽체 마감용 이동식 비계 작업 발판 설치 등	☐										
	■ 작업발판 설치상태	☐	☐	☐	○	☐										
② 지붕	■ 지붕 위, 안전조치 -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	☐	○	☐										
	■ 강도가 약한 지붕재료(썬라이트 등) 위 작업발판 또는 채광창 덮개 설치	☐	☐	☐	○	☐										
③ 사다리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 - (A형·조경용)발붙임 사다리 외에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경작업, 비계·고소작업대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사용				○											
	<table><tr><th>작업높이*</th><th>안전작업 지침</th></tr><tr><td>1.2m 미만</td><td>안전모 착용</td></tr><tr><td>1.2m 이상 2m 미만</td><td>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작업금지</td></tr><tr><td>2m 이상 3.5m 미만</td><td>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td></tr><tr><td>3.5m 초과</td><td>작업발판 사용금지</td></tr></table>	작업높이*	안전작업 지침	1.2m 미만	안전모 착용	1.2m 이상 2m 미만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작업금지	2m 이상 3.5m 미만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m 초과	작업발판 사용금지	☐	☐	☐		☐
	작업높이*	안전작업 지침														
	1.2m 미만	안전모 착용														
	1.2m 이상 2m 미만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작업금지														
	2m 이상 3.5m 미만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m 초과	작업발판 사용금지															
* 작업높이 : 바닥에서 발을 딛는 디딤대 까지 높이																
④ 고소 작업대 (차)	■ 고소작업대의 안전조치 -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과상승방지장치 부착 등	☐	☐	☐	○	☐										
	■ 작업자 탑승상태에서 주행(이동) 금지	☐	☐	☐	○	☐										
⑤ 철골 및 거푸집 동바리	■ 철골 조립·해체시 안전조치*				○											
	*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철골 인양·조립전 지상에서 우선 설치), 안전대 등	☐	☐	☐		☐										
	■ 주요 이동통로 안전조치*	☐	☐	☐	○	☐										
	* 고정된 가설통로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거푸집동바리, 데크플레이트 조립·해체시 안전조치*	☐	☐	☐	○	☐										
	*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설치 등															

점검 항목		해당 여부	점검결과		조치사항	조치 완료
			적정	부적정		
< 끼임 >						
⑥ 건설 기계·장비, 설비 등 안전 및 방호장치	■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양중기의 안전조치* * (공통) 근로자 출입금지, 유도자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전조등, 후미등, 후사경, 제동장치, 안전띠 등 * (굴착기) 퀵커플러 안전핀, 후방영상표시장치, 인양작업시 달기구, 작업설명서 확인 등 * (지게차) 백레스트, 헤드가드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 (양중기 :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 기타 :	☐	☐	☐	○	☐
	■ 정비, 보수, 수리작업시 안전조치 - 전원 차단, 안전블 유락·고임목 설치, 작동금지 표지판 부착	☐	☐	☐	○	☐
	■ 기계·설비* 또는 돌출부의 덮개·울 설치 * (예) 핸드글라인더, 목재가공용 등근톱, 절단기 등	☐	☐	☐	○	☐
< 부딪힘 >						
⑦ 혼재 작업	■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	☐	☐	○	☐
	■ 작업구간, 이동동선 등의 구획상태	☐	☐	☐	○	☐
	■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등의 배치·통제	☐	☐	☐	○	☐
⑧ 충돌 방지 조치	■ 건설기계·장비 등의 결함 또는 작동이상 여부	☐	☐	☐	○	☐
	■ 인양·하역 작업시 부딪힘위험 안전조치 - 인양 유도로프 사용, 2줄걸이 결속, 혹 해지장치 부착 등	☐	☐	☐	○	☐
	■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여부	☐	☐	☐	○	☐
	■ 건설자재, 중량물 등의 적재장소 및 상태	☐	☐	☐	○	☐
< 기타 >						
추락위험	■	☐	☐	☐	○	☐
끼임위험	■	☐	☐	☐	○	☐
부딪힘위험	■	☐	☐	☐	○	☐

공공기관 사고사망 재발방지계획서

2024. 00.

○○○○기관명

1. 공공기관 개요

공공기관명		산재관리번호	
본사 소재지		사업개시번호	
일선기관 소재지	일선기관에서 발생한 경우	전화번호	
소 속		작성자	
작성일		확인자	

2. 사고사망 사업장(현장) 개요

사업장(현장)명	회사명 기재	산재관리번호	
현장명	발주인 경우 기재	사업개시번호	
현장 소재지			
계약종류	도급, 발주, 직영, 기타	계약금액(천원)	
계약(공사)기간		공정율	발주인 경우 기재

3. 사고사망 개요(자체 사고조사 중심)

재해발생 개요 (6하원칙)	필요시 재해발생 상황도 작성	
○ 언 제 : ○ 어디서 : ○ 누 가 : ○ 무엇을 : ○ 어떻게 : ○ 왜 :		
재해원인분석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기술적)		
(교육·관리적)		
재발방지대책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기술적)		
(교육 · 관리적)		

4. 전사적 사고사망 재발방지계획

< 작성방법 >

- 사고사망 발생에 대한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체계 중심의 7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추진과제 및 내용을 상세히 작성
 - 추진과제 등의 재발방지계획의 이행주체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도록 작성
- *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의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계획 수립, ⑥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⑦평가 및 개선
- 재발방지계획서의 현장 실행력이 담보되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 필요시 도면·사진 등 활용하여 동종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중심으로 작성

가. 공공기관 체계 중심의 재발방지계획 및 대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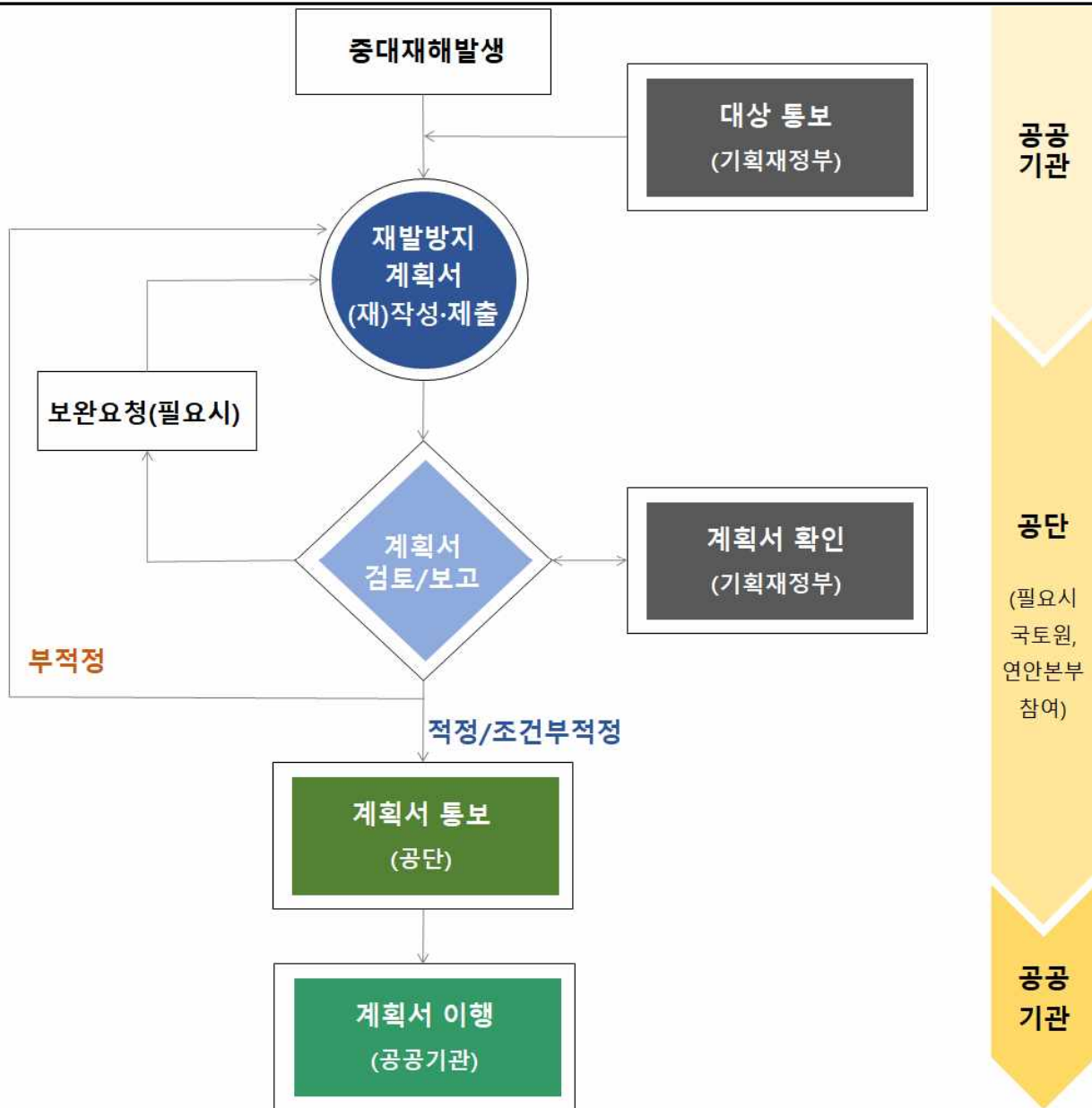
- ☐ 현황 및 문제점
- ☐ 추진과제
- ☐ 추진내용
- ☐ 과제별 추진일정 (담당자(확인자), 소요예산 포함)
- ☐ 기타 추가적 사항

나. 현장 실행 중심의 재발방지계획 및 대책 수립

- ☐ 현황 및 문제점
- ☐ 추진과제
- ☐ 추진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예정)
(필요시) 현 실태의 도면, 사진 등 삽입	도면, 사진 등 개선하고자 하는 타 안전사례를 삽입

- ☐ 과제별 추진일정 (담당자(확인자), 소요예산 포함)
- ☐ 기타 추가적 사항



구분	검토 기준
적정	-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의 종사자와 대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계획서 상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제4조 제4항(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 관련 법령(중처법, 산안법 등), 지침 제3조 제3항 및 제3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조건부적정	- 계획서 내용 중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했지만, 기술표준(고사) 및 기술지침(KOSHA Guide)의 내용 위배 등
부적정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위배되어 작업·이용 시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계획서 내용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방지계획서』 및 이행수준 점검표

2024. 00.

○○○○기관명

『재발방지계획서』 및 이행수준 점검표

1. 점검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회 사 명		발주기관명	
현 장 명		현장주소	
공 사 금 액		공 정 률	
점 검 일		점 검 자	

☐ 총평

2. 점검내용

☐ 재발방지계획 이행 · 점검결과

○ (추진과제1)

○ (추진과제2)

□ 이행수준 점검결과(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점)

■ 「추락·끼임·부딪힘」 위험 핵심 점검사항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 표시

점검 항목		해당 여부	부적정 여부	개선 방법(장소)										
점검 결과(합계)		__개	__개	부적정률 : ____%										
< 추락 >														
① 비계	■ 시스템 비계, 강관비계의 안전조치 *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	○										
	■ 달비계의 안전조치 *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로프 고정점 2개소 이상 확보 등, 로프길이 등	☐	☐											
	■ 이동식비계의 안전조치 * 최상단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											
	■ [공통] 작업발판 설치상태	☐	☐											
② 지붕	■ 지붕 위, 안전조치 *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	○										
	■ 강도가 약한 지붕재료(썬라이트 등) 위 작업발판 또는 채광창 덮개 설치	☐	☐											
③ 사다리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 * (A형, 조경용)발붙임 사다리 외에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경작업, 비계·고소작업대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사용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작업높이*</th> <th>안전작업 지침</th> </tr> </thead> <tbody> <tr> <td>1.2m 미만</td> <td>안전모 착용</td> </tr> <tr> <td>1.2m 이상 2m 미만</td> <td>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작업금지</td> </tr> <tr> <td>2m 이상 3.5m 미만</td> <td>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td> </tr> <tr> <td>3.5m 초과</td> <td>작업발판 사용금지</td> </tr> </tbody> </table>				작업높이*	안전작업 지침	1.2m 미만	안전모 착용	1.2m 이상 2m 미만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작업금지	2m 이상 3.5m 미만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m 초과	작업발판 사용금지
	작업높이*				안전작업 지침									
	1.2m 미만				안전모 착용									
	1.2m 이상 2m 미만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작업금지									
	2m 이상 3.5m 미만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m 초과	작업발판 사용금지													
④ 고소 작업대 [차]	■ 고소작업대의 안전조치 *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과상승방지장치 부착 등	☐	☐	○										
	■ 작업자 탑승상태에서 주행(이동) 금지	☐	☐											
⑤ 철골 및 거푸집 동바리	■ 철골 조립·해체시 안전조치 *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철골 인양·조립 전 지상에서 우선 설치), 안전대 등	☐	☐	○										
	■ 주요 이동통로 안전조치 * 고정된 가설통로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											
	■ 거푸집동바리, 데크플레이트 조립·해체시 안전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설치 등	☐	☐											

점검항목		해당 여부	부적정 여부	개선 방법(장소)
< 끼임 >				
⑥ 건설 기계·장비 , 설비 등 안전 및 방호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양중기의 안전조치 * (공통)근로자 출입금지, 유도자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전조등, 후미등, 후사경, 제동장치, 안전띠 등	☐	☐	○
	굴착기의 안전조치 * 콰터플러 안전핀 체결, 후방영상표시장치 장착, 인양작업시 달기구 조치, 작업설명서 확인 등	☐	☐	
	지게차의 안전조치 * 백레스트, 헤드가드	☐	☐	
	양중기(이동식크레인·리프트 등)의 안전조치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	☐	
	고소작업대(차)의 안전조치 * 과상승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	☐	
	정비, 보수, 수리작업시 안전조치 * 전원 차단, 안전블락고임목 설치, 작동금지 표지판 부착	☐	☐	
	기계·설비 또는 돌출부의 덮개·울 설치 * (ex) 핸드글라인더, 목재가공용 동근톱, 절단기 등	☐	☐	
< 부딪힘 >				
⑦ 혼재 작업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	☐	○
	작업구간, 이동동선 등의 구획상태	☐	☐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등의 배치·통제	☐	☐	
⑧ 충돌 방지 조치	건설기계·장비 등의 결함 또는 작동이상 여부	☐	☐	○
	인양·하역 작업시 부딪힘위험 안전조치 * 인양 유도로프 사용, 2줄걸이 결속, 혹 해지장치 부착 등	☐	☐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여부	☐	☐	
	건설자재, 중량물 등의 적재장소 및 상태	☐	☐	
< 기타 >				
추락 위험	단부, 개구부 등의 안전조치 *	☐	☐	○
		☐	☐	○
끼임 위험		☐	☐	○
부딪힘 위험		☐	☐	○

1.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 다수의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로서,
 - 중앙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고(언론에 단신으로 보도된 사고는 제외)
 - 또는 시민사회단체(노동계 등), 언론, 학계, 정부 등에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이 공론화(요구)된 사고

 **(관련근거)**

- ①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 제2조(정의)
- ② 재난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중대사고 정의 참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험수준 관리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 필요시 안전관리 전문기관(안보공, 국토원, 연안본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되는 사고